'취업재(개인창작활동종사자)' 인정기준 안내

구분	인정조건	증빙자료	비고
공연	장소 : 등록공연장 또는 사업자등록증 [종 목]에 '공연장소'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공연장 횟수 : 1편 이상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	공연장 등록증 또는 공연장 사업 등록증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확인서 졸업자와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 사와의 계약서 팸플릿 또는 해당공연 관련 책자	4가지 모두 제출
전시	장소 : 등록미술관, 박물관 또는 사업자등록증 [종목]에 '전시장소'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전시장 횟수 : 1편 이상 전시에 참가한 출품자 및 스태프 포함	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증 또는 전시장 사업등록증 전시장에서 발급한 전시확인서 졸업자와 전시장 또는 전시기획 사와의 계약서 팸플릿 또는 해당전시 관련 책자	4가지 모두 제출
출판 및 출반	[오프라인 기준] 출판 및 출반사: 사업등록 3년 이상 초판 500부 이상 「출판문화사업 진흥법」제9조에 의해 특별자치 도지사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	[오프라인 기준] •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 • 졸업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서 • 인쇄증명서 • 발간된 출판·출반물 원본	4가지 모두 제출
	[온라인 기준] 출판 및 출반사 : e-book 발간 전문업체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	[온라인 기준] • E-book 발간 업체 사업자등록증 • 졸업자와 온라인업체와의 상용화 계약서 • 온라인에 게시된 출판·출반물 URL주소 및 캡처본	3가지 모두 제출
영상 제작물	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오프라인 상영·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 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영화·영상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	•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(영상 물,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확 인 가능해야 함)	제출
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	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「저작권법」제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	신탁기관과의 신탁체결서 저작권을 통한 수입증명서	2가지 모두 제출

- O 스태프의 정의는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(문화체육관광부 예규) 제4장 제15조(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)에 의거함
- O 신탁기관 :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, 한국음원제작자협회,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, 한국방송실연자협회,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, 한국방송작가협회,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,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